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059390 판결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소진영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30㎡(이하 'C 도로'라고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9㎡(이하 'C 도로 중 (ㄱ)부분'이라고 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8.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 1956. 10. 6.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서울 동작구 E 대지 27.4평(이하 '원매수토지'라고 함)을 매수하였고, F이 그 무렵 이를 매수하여 D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에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며, F이 사망한 후인 1987. 11. 11. 원매수토지 중 일부인 E 대 36㎡(이하 'E 대지'라고 함)에 관하여 위 1956. 10. 6. 매매를 원인으로 F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G은 2016. 10. 31. 아들 부부인 원고들에게 E 대지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E 대지상에는 무허가 주택 1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E 대지 외에 C 도로 중 (ㄱ)부분 등도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C 도로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D이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을 F이 원매수토지와 함께 매수하여 1957년경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배우자와 자녀인 G과 원고들이 순차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양수하여 C 도로 중 (ㄱ)부분을 그 부지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위 (ㄱ)부분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도로는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사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원고 측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툼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인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1911년에 작성된 지적도(을 제8호증)에 의하면 C 도로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동작구 H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함)는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는 달리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道'로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가늘고 긴 형태로서 그 형상을 보아도 실제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토지조사부 혹은 토지대장에 등록(등재)된 적은 없어 보이므로(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1975. 10. 30. 서울특별시 소유로 신규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분할 전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로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C 도로 중 (ㄱ)부분이 도로가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라도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분할 전 토지 내지 C 도로가 공용폐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C 도로 중 (ㄱ)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ㄱ)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

별지